



## 한 헌법학자의 언론법 탐구 여적(餘滴)

성낙인 前 서울대학교 총장

### 1. 프롤로그: 반론권과 언론중재위원회

필자는 지난 반세기 동안 법과대학에서 헌법학을 연구하고 강의하여 왔다. 헌법학은 기본권과 정치제도가 중심축을 이룬다. 기본권에서는 신체의 자유, 재산권과 더불어 표현의 자유가 핵심적인 축이다. 이에 필자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포괄하는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 중에서 특히 언론의 자유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술활동을 하여 왔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생명선”으로 받아들인다. 그만큼 언론의 자유 없는 민주주의는 없다는 명제이다. 언론의 자유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외부에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는 표현을 할 수 있는 정보를 가져야 한다. 정보가 없는 암흑사회 또는 정보가 왜곡되는 사회에서 참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설화가 이를 단적으로 적시한다. 그런 의미에서 언론의 자유는 곧잘 언론기관 즉 언론사의 보도의 자유로 인식되기도 한다.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도 개인의 언론의 자유와 더불어 언론기관의 자유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자유의 남용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불가피

하다. 이와 관련하여 사상의 자유시장론에 입각한 영미법계에서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재보다는 잘못된 보도에 대하여 일종의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대응한다. 반면에 프랑스와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론에 따라 반론권 내지 반론보도청구권을 일찍이 시행하여왔다. 18세기말 절대군주가 지배하던 구시대(ancien régime)에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구시대를 청산한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에 자유주의 전성시대를 구가하면서 언론도 혁명 이전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자유 과잉시대를 맞이하면서 언론의 지나치게 선정적인 보도 등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으로 언론보도에 대한 반론권을 법제화하기에 이르렀다. 프랑스에서는 혁명 이후 여러 차례 반론권 관련 법제가 제정된 이후 1881년 제정된 「언론 자유에 관한 법률」(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을 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sup>1)</sup> 그 반론권제도가 독일에서는 연방 법률이 아니라 주 법률로 반론권제도를 도입하였다.

한국에서 반론권과 언론중재위원회의 탄생은 아주 뜻밖의 상황에서 비롯되었다. 1980년 5·18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군부는 ‘언론 통·폐합’ 정책을 시행하여 국민적 원성을 샀다. 이어서 언론기본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또한 대표적인 5공 악법으로 비난을 받아왔다.

하지만 언론기본법에는 오늘날 언론법제의 토대가 되는 좋은 내용도 있다. 그 당시 ‘알 권리’가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던 터에 ‘알 권리’를 실정법에서 최초로 명기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논란의 소지를 가지 있는 취재원비권도 보장한다. 무엇보다도 반론보도청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비록 법률에서는 ‘정정보도청구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학계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이는 반론보도청구권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정정보도청구권 제도 도입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박용상 판사는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주 언론법 규범에 기초하였다고 한다.

반론보도청구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가 이 법에서 최초로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필자는 언론중재위원회 40년을 기념하는 컨퍼런스에서 회고와 더불어 발전방향에 관하여 주제발표를 한 바 있다.<sup>2)</sup>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 제도는 외국의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 특유의 제도이다. 필자는 일본 신문편집인협회의 초청 특별강연을 한국의 언론중재제도를 소개한 바 있다. 이에 일본 언론계에서는 언론중재를 정부주도로 할 수는 없지만, 언론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그에 따라 우선 방송분야에서 방송중재제도를 도입하려 한 바 있다.<sup>3)</sup> 이 과정에서 일본 독교(獨協)대학

1) 성낙인 (1999). 프랑스의 언론법제(1) : 정기간행물법제. <세계 언론법제 동향>, 통권 제5호. 서울: 한국언론재단. pp.1-39.

2) ‘언론조정중재제도 40년의 성과와 입법 과제’ 토론회(프레스센터 외신기자 클럽, 2021. 5. 27); 성낙인·김태열 (2021). 언론조정중재와 언론피해구제 - 40년의 변화와 성과. <세계헌법연구> 27권 3호,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pp.1-36.

3) 성낙인 (1996. 2). 言論表現にとる國民の權利侵害に對する救濟制度. <日本 法律時報> vol. 68, no. 2, pp.74-78項.

헌법학자인 우자끼 교수는 필자의 안내로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이던 원우현 교수도 예방한 적이 있다.

언론기본법은 민주화 이후 악법으로 지목되어 폐지되었다. 하지만 그 후속 법률로 제정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반론권과 언론중재는 살아남게 되었다. 그 이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이 법에서는 원래 반론보도청구권 중재에서 출발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더 나아가 정정보도청구권까지 중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매우 신중한 적용이 요망된다. 왜냐하면 언론중재의 지나친 확장은 자칫 언론자유에 대한 제한 내지 개입으로 오해를 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반론권제도를 도입한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은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더 나아가 정정보도청구권은 여전히 법원의 판단사항으로 남겨두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언론중재제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매우 독특한 제도이다. 하지만 언론중재는 나름 한국적 상황에서 국민과 언론 사이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 2. 언론중재에서 언론실무를 직접 체험

필자는 30여 년 전 두 차례에 걸쳐서 언론중재위원을 역임하면서 헌법학자로서 또는 언론법학자로서 〈언론중재〉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고, 때로 언론중재 연차 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단순히 상아탑에만 머물면서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여왔던 이론가에서 더 나아가 언론실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특히 위원회는 현직 법관이 중재부장이고 언론인 출신뿐만 아니라 언론학자, 법학자, 법률가 등도 포함되어 있어서 서로 다른 시각에서 언론문제를 접하였던 분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대화와 토론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그 과정에서 언론현장을 누비던 언론인들은 언론중재를 통해서 처음으로 언론법이론 뿐만 아니라 재판실무까지 접할 수 있는 소중한 장이라고 술회하기도 하였다. 필자도 많은 언론인들과 공론의 장을 가질 수 있었다. 특히 서울대 법대 선배이신 한동원 중재위원님, 한국일보 출신의 김해도 사무총장(부위원장) 같은 분들의 열정과 사랑이 지금도 뇌리에 남아있다.

법학자로서 필자는 특히 법적인 현안이 제기될 때마다 위원회로부터 원고 청탁을 받아 때로는 밤을 새우면서 논문을 쓰던 기억이 새롭다. 예컨대 헌법재판소가 사죄광고제도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함에 따라 갑자기 이에 대한 평석을 청탁받아 급히 원고를 완성하기도 하였다.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일본과 한국에서는 금전적 손해배상보다는 오히려 사죄광고라는 독특한 제도를 운영하여왔는데, 법원의 판결문의 일부로 제시되면서 사실

상의 제도로 작동하여왔다. 그런데 「민법」 조문에는 없지만, 이론과 판례로 존재하여오던 사죄 광고제도에 대하여 「헌법」에서 보장된 인격의 존엄과 가치 및 그를 바탕으로 하는 인격권과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sup>4)</sup> 또한 설악산에서 개최된 위원회 연차 연수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밤새 위원들과 소주잔을 나누면서 언론현장의 실상과 언론이론에 대하여 토론하기도 하였다. 그간 필자가 언론중재위원회와 인연을 맺는 동안 위원회를 이끌어주신 김두현·박영식·조준희·권성·박용상·양인석·이석형 위원장님들을 비롯한 위원회 전·현직 임직원분들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한다.

프랑스에서 법학을 공부한 경험에 따라 위원회의 요청으로 프랑스의 대표적인 언론법 저널인 <Legipresse>를 구매하는 절차를 직접 밟기도 하였다. 또한 매호가 위원회에 도착하면 판례 평석을 위하여 바로 필자에게 우송해 주었다. 필자는 수년에 걸쳐서 <Legipresse>에서 우리에게도 유용한 판례를 선별하여 번역과 더불어 평석을 붙여 언론중재에 소개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소개된 최초의 프랑스 언론판례라 할 수 있다.

<언론중재>에는 그간 언론학 및 언론법학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학자들의 논문이 게재되어 왔다. 그런데 <미디어와 인격권>이라는 학술지를 독자적으로 간행하면서 <언론중재>는 사실상 학술지로서의 성격보다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일반전문지 성격으로 전환된 점에 대하여는 아쉬움을 가진다.

### 3. 정보공개법 등 언론관계법의 제정과정에 참여

1988년에 한국공법학회 회장이던 김철수 교수님의 권유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정보사회의 핵심 법률인 사생활보호법과 정보공개법 시안을 작성하였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을지로의 구 서울대 음대 자리에서 출범하면서 황우여 부장판사께서 헌법재판소 초대 연구부장으로 부임하였다(황 부장은 후일 한나라당 대표와 교육부총리를 역임한 바 있다). 이에 필자는 당시 한국공법학회 총괄간사로서 황 부장님과 더불어 김선욱 박사와 함께 퇴근 시간 후에 연구부장실에서 법안 작성 작업을 계속하였다. 황 부장은 독일과 미국에서 연구생활을 한 바 있고, 김 박사는 그때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지 얼마 안 되는 신진 박사였다(김 박사는 후일 법제처장과 이화여대 총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필자는 프랑스에서 학위를 취득한 티라 세 사람은 미국, 독일, 프랑스의 사생활보호법과 정보공개법을 참조하여 한국적인 법안을 성안하기에 이르렀다. 그때 정보공개법 시안을 작성하면서 나름대로 프랑스의 정보공개법의 장점도 적극 반영하였다.

4) 헌재 1991.4.1. 89헌마160, 민법 제764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일부위헌); 성낙인 (1992). 명예훼손에 대한 사죄광고제도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언론중재>, 봄호.

1994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보공개법을 제정하겠다고 천명하였다. 이에 총무처(나중에 총무처는 행정안전부에 통합되었다) 능율국을 주무국으로 하여 정부 정보공개법 시안을 작성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다. 서울대 부총장을 역임한 행정법학자인 최송화 교수를 정부 정보공개법심의위원장으로 모시고 법학자와 행정학자 등도 두루 참여하여 법안을 성안하기에 이르렀다. 그 당시 법안 성안 과정에서 보여준 노력의 결과 후일 정부법률안 성안의 모범과정이라는 칭송을 받기도 하였다. 당시 김종양 주무국장은 후일 '정보공개법'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법제처와의 이견으로 프랑스식 정보공개위원회 제도가 도입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필자는 프랑스 정보공개법과 같이 우리나라의 행정심판과는 별개의 정보공개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입장이었다. 왜냐하면 정부 행정심판은 국민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에 제도의 존재의의가 있다면, 정보공개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의 실천적 구현에 그 존재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법안심의 위원회에서도 필자의 견해를 받아들여 정보공개위원회를 독자적으로 설치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필자는 그때 위원회 안을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청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바 있다. 그런데 위원회 법안은 행정심판을 담당하던 법제처의 반대로 행정심판으로 넘어갔다. 법 시행 후 필자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산하의 초대 정보공개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정부 정보공개위원장도 두 차례에 걸쳐서 재임하면서 나름 보람을 가질 수 있었다. 특히 정보공개법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제정된 법률이라 아시아 각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자카르타)를 비롯하여 아테나워재단의 초청으로 싱가포르·베트남(다낭)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에서 한국의 정보공개법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하였다.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정보공개법 초록을 만들었지만 정작 법률은 한국보다 늦게 제정하였다. 필자는 일본 변호사연합회와 아시히신문 초청으로 한국 정보공개법을 소개하기도 하였다.<sup>5)</sup>

또한 필자는 인터넷시대에 접어들면서 필수적인 법률들의 제정에 정부법안심의위원장으로 참여한 바 있다. 현재 시행중에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은 원래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었는데 이 법 또한 전 세계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법률이다. 그런데 시대변화에 순응하여 이 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법률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정보통신부에서 법안심의위원회를 마련하였다. 정보통신망법 또한 전 세계에서 그 예를 찾기 어려운 법이라 필자는 위원장으로서 법학자, 경제학자, 행정학자 등을 두루 위원으로 위촉하여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관계자들의 협조로 법안을 성안하였다. 처음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하였으나 당시 개인정보 주무부처인 총무처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우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5) 성낙인 (2005). 韓國における情報公開法の 制定、改正と運用. 獨協大學 (法學) 第4號, pp.32-48項.

등에 관한 법률'로 시행하다가 다시 총무처의 양해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칭하는 새 법률을 만들었다. 그 사이 정부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사적 부분까지 포괄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개인정보에 관련한 정보통신망법의 내용은 대폭 수정되었다. 그밖에도 정보통신부에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에도 심의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 4.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언론정보법>, <세계 언론판례 총람> 출간

대학에서의 강의,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실무, 정부 법제정과정에서의 참여 등을 경험으로 하여 헌법학자로서 또는 언론법학자로서 발표한 논문들을 중심으로 1998년에 <언론정보법>(나남)을 출간하였다. 이는 한국에서 최초의 언론법 저서로 자부할 수 있다. 1천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저서이지만 시장성이 빈약한 책을 흔쾌히 출간해준 조상호 나남 회장께도 감사드린다. 그간 언론정보학과에서는 '언론윤리법제론'이라는 제목으로 강의가 진행되어왔다. 그런 점에서 본격적인 언론법 교재가 사실상 부재한 상태였다. 이에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에서는 필자에게 언론법 강의를 요청하였지만, 당시에는 학교 보직 등으로 헌법 이외에 강의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하였다. 마침 정년퇴임하시고 시간의 여유를 가진 은사인 김철수 교수님께서 강의를 흔쾌히 담당해 주셨다.

1996년에는 또한 한국언론연구원으로부터 <세계 언론판례 총람> 간행을 부탁받았다.<sup>6)</sup> 서울대에서 '언론의 공적 과업'이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언론법 연구의 대가이신 박용상 선배를 연구책임자로 하고 한위수 부장판사, 김재협 판사, 황도수 헌법연구관이 참여하며 한국에서 최초이자 가장 방대한 세계언론판례집을 출간하였다. 필자는 간사로서 실무적인 뒷받침도 총괄하였다. 특이한 점은 외국의 경우 원고와 피고가 판례명이지만, 한국에는 판례명이 없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숙의하여 임의로 판례명을 작명하였다. 이를테면 언론법 판례에 관한 한 한국 최초의 작명가가 된 셈이다. 이 연구는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의 언론관련 판례를 총괄한 대단히 큰 작업이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그때 판례 번역에 헌신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이는 국내에서 최초의 가장 방대한 비교판례 작업이라고 자부한다.

6) 박용상·성낙인·한위수·김재협·황도수 (1998). <세계 언론판례 총람>.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편]



## 5. 한국언론법학회 창립 참여

서울대 법대 선배이고 고려대 언론대학원장이신 원우현 교수님이 어느 날 필자에게 한국언론법학회를 창립하고자 하니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셨다. 원 교수님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하실 때부터 잘 아는 사이이고, 특히 2000년 한국언론학회 회장 재임 당시에는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에서 필자에게 언론법 관련 기초발제 기회를 주신 적도 있다.

그사이 법대 출신으로서 고려대 신문방송학과에서 언론법제론 강의를 하신 백 그라운드에 있으시기에 언론학회장 퇴임 이후에 언론법학회의 창립을 통한 활동을 기대하신 것 같다. 2002년 설립준비위원회 겸 창립이사로는 원 교수님을 비롯해서 한국외대에 계시는 김진홍 선배님, 건국대 유일상 교수님과 필자가 참여하였다. 원 교수님이 초대 회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언론법 관련 학회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셨다. 원래 설립 시에는 언론학자와 법학자가 교대로 학회 회장을 맡기로 하였다. 다만, 2대 회장의 경우에는 동아일보 해직기자 출신으로 언론학자인 외대 김진홍 교수님을 모시고 3대 회장은 필자가 맡는 것으로 양해가 되었다. 그런데 필자는 갑자기 과분한 중책을 맡고 있는 상황이라 안타깝게도 언론법학회장을 맡지 못하여 개인적으로도 매우 유감스럽고 특히 원우현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에게도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 당시 필자는 서울대 법대 학장을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공법학 분야에서 헌법학자와 행정법학자를 아우르는 가장 역사가 깊고 큰 학회인 한국공법학회장 차기회장으로서 곧 회장으로

취임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원 회장께서 거액을 희사하여 제정한 한국언론법학회 철우언론법상의 심사위원장을 맡도록 배려해 주기도 하셨다.

창립 직후 언론법학회 임원들은 김성재 당시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을 예방한 적이 있다. 가형께서 문화공보부에 오래 재직하신 적이 있는지라 필자의 방문을 알고 가형을 모시던 분들이 반갑게 맞이한 기억이 새롭다. 직원들이 정보를 사전에 주었는지 김 장관은 대뜸 필자에게 “며칠 전 신문에 보도된 논문의 저자시군요”라고 친절하게 인사하였다. 필자는 그즈음 서울대 법학지에 “선거와 언론”이라는 논문을 게재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인연으로 현재 김대중도서관 이사장인 김 장관과는 지금도 가끔 만나서 회포를 푼다. 특히 지난 12월 16일 광주에서 개최된 제1회 김대중평화상 시상식에서 주제발표와 축사를 함께하여 오래만에 감회가 새롭다.

## 6. 9·11테러 및 인공지능 시대의 언론법 변화에 대응

언론법뿐만 아니라 법학의 큰 흐름은 시대변화와 따로 작동할 수는 없다. 근대 입헌국가에 이르는 과정에서 인류사회에 가장 큰 변화인 미국의 독립국가 건국(1787년), 프랑스의 시민혁명(1789년)을 통하여 인류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한 획이 그어졌다. 더 나아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의 모습이 자유국가·소극국가·야경국가에서 적극국가·급부국가·사회국가·복지국가·사회복지국가로 바뀌면서 법제도 그 흐름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런데 20세기 후반의 정보사회는 21세기 벽두에 일어난 미국의 9·11테러 이후 및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의 출현에 따라 법학도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한다. 이는 이전의 법제나 법인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한다.<sup>7)</sup>

이러하면 9·11 이전에는 개인정보보호를 명분으로 한국과 같이 태어나면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는 ‘백 넘버’ 사회와 손가락지문날인 제도는 야만적인 것으로 치부되었다. 1990년대 이후 당시 내무부에서는 전자주민등록증 제도를 도입하려 하였다. 필자도 이 작업에 참여하여 그 타당성을 인지하였다. 전자주민등록증에는 운전면허, 건강보험 등 간단한 사항을 수록하는데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 제도 자체를 부정하던 진보이론가들의 반대로 인하여 무산되었다. 최근에는 사실상 전자주민등록증이 제도화된다. 2024년 12월부터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착용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된다.

그런데 9·11 이후의 법제는 이를 뛰어넘어 생체인식까지 일반적으로 합법화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시대에 이르면서 딥페이크(deepfake)와 같은 새로운 법적 문제가 제기된다. 정보의 홍수 속에 ‘잊힐 권리’ 등 이전에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던 새로운 법적 문제가 제기된다. 인

7) 성낙인 (2023). 사회변동과 입헌주의. <헌법학연구> 제29권 제4호, pp.1-57.



공지능 시대가 더 진전될수록 챗GPT(Chat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고, 더 나아가 사람과 유사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지능을 갖춘 인공지능인 ‘범용 AI(AGI)까지 출현하고 있다. 이는 인류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히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심각한 도전이 전개된다. 유럽에서는 AI규제법을 제정하고 미국에서도 주 법률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13개의 AI규제법이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sup>8)</sup>

## 7. 에필로그: ‘한국의 언론법학자’로 선정된 영광

한국언론법학회에서는 충남대 이승선 회장이 재임 중일 때 ‘한국의 언론법학자’ 시리즈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과분하게도 필자도 포함시켜 주어서 정동의 회의실에서 언론법학회 관계자들이 입회한 가운데 대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필자의 제자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허진성 교수가 “동당 성낙인 교수의 언론법 사상”을 집필하여 이를 언론법학회 학회지인 <언론과 법> 제 20권 제2호에 게재하였다. 전체 일곱 분(팽원순, 한병구, 김동철, 원우현, 박용상, 성낙인, 염규호)에 대한 내용은 이후 한국언론법학회에서 <언론법학자의 생애와 사상>으로 출간되었다.<sup>9)</sup> 특

8) 성낙인 (2024. 11. 8). 기조연설 “AI 시대에 직면한 사회변동과 법적 과제” 제4회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국제 학술포럼.

9) (사)한국언론법학회 (2021). <언론법학자의 생애와 사상>. 고양사: 정독

별히 큰 학문적 기여도 못하고 언론법학회에서도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한 필자에게는 과분한 칭송이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감사드린다.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로 부족한 필자가 법학자로 살아오면서 너무나 과분한 역할과 평가를 받아왔다. 헌법학 특히 언론법 분야에서 송구스러울 정도로 예우를 받은 것 같다. 그간 필자의 언론법 연구를 이끌어주신 서울대 법대의 김철수·김동희·최송화 교수님, 고려대의 원우현 교수님, 한국외대의 김진홍 교수님, 박용상 전 언론중재위원장님, 일본 도쿄대학(獨協大学)의 우자끼 교수님 그리고 학문적 여정을 함께한 선배·동료의 각별한 지도와 배려에 감사드린다. 끝으로 필자의 헌법학교실에서 함께 한 후배·제자들에게도 법률가로서 또는 학자로서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도한다. ☸